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19호

2019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연장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기술평가·금융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7.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기술이전·거래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사업화	공공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분야에서 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나눔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나눔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평가·금융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평가·금융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기술이전·거래		▪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 사업화	공공	▪ R&BD,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사업화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 R&BD,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사업화 등 사업화 추진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나눔		▪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기술평가·금융		▪ 기술평가·금융을 통해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6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2점)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장관표창		원장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술이전·거래		1	1	1	1
기술사업화	공공	3	2	2	2
	민간	3	2	2	2
기술나눔		1	1	-	-
기술평가·금융		1	1	1	1
합 계		**9**	**7**	**6**	**6**

* 상장 수여 시 별도의 포상품(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규모는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5.27.(월)~7.26.(금)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8월중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8월중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9월초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9월중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0월초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10월중
시상식	상장 및 상금 수여 *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內 시상	12월중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준

○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거래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기술사업화	공공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민간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기술나눔		▪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동반성장 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기술평가·금융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파급효과(20), 기타(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 5. 27.(월) 09시 ~ 2019. 7. 26.(금) 18시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 제출서류

신청분야	제출서류		서식	수량
전 분야 공통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	서식1	2부(원본1, 사본1) 및 **전자파일***
		단체		
	• 공적조서	개인	서식2	
		단체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개인	서식3	
		단체		
	• 추천서	개인	서식4	
		단체		
추가 서류	• 소속기업·기관 사업자 등록증 및 최근 3년 재무제표(기업만 해당)		서식 없음	
	•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외부인의 감사의견” 있는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연락처	02-6009-4305 / 조승미 연구원
이메일	csm1014@kiat.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표창대상 :**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단체 등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

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접속방법은 산업기술개발과에 문의)

□ 장관표창 취소

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별첨1> 1. 신청서(개인부문)

<별첨2> 2. 신청서(단체부문)

<붙 임>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별첨1> 신청서 - 개인부문

서식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	개인부문

접수번호		접수일자	2019 년 월 일

포상분야 (택1)	□기술이전 · 거래 □기술사업화(공공) □기술사업화(민간) □기술나눔 □기술평가 · 금융

소속기관	업체(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			홈페이지주소	
	설립일자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목			업 종	
	소재지	본사	(우편번호)		
		공장	(우편번호)		

유공자	성 명	(한글)	연락처(휴대폰)	
		(영문)	E-Mail	
	주민등록번호	-	나이	(만 세)
	직장주소	(우편번호)		
	소속(직업)	직위(직급)	근무기간(공적기간)	
			년 월 일(총 개월)	

※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담당자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소속/직위		팩스	

상기 내용으로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공적조서, 2. 포상동의서, 3. 포상추천서, 4. 공적증빙자료

20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업체(기관) 대표자 또는 확인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서식2

기술사업화 유공자 공적조서

개인부문

사진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소속업체(기관)		직위	
	주민등록번호	-	근무기간(공적기간)	년 월 일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	년 월 일	발급처
		□훈장 □포장 □표창	년 월 일	
		□훈장 □포장 □표창	년 월 일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 현황 (기업체 해당)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도로명 주소 표기)

공적 상세기술서 (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과거포상기록 해당사항 ☑표시

※ 과거 포상기록 등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상훈법」및 「정부포상업무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추천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산재번호 관련, 추천대상이 대표자일 경우 단위사업장 모두 기재, 임원 이하는 해당 사업장만 기재

※ 최근 2년 이내 타 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체 산재번호도 기재

서식3	**정부포상 동의서**	개인부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원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원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 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4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추천서

개인부문

포상분야 (택1)	□기술이전 · 거래 □기술사업화(공공) □기술사업화(민간) □기술나눔 □기술평가 · 금융

소속기관	업체(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주생산품목		업 종	

유공자	성 명	(한글)	연락처(휴대폰)	
		(영문)	E-Mail	
	주민등록번호	-	나이	(만 세)
	직장주소	(우편번호)		
	소속(직업)	직위(직급)	근무기간(공적기간)	
			년 월 일(총 개월)	

추 천 내 용 ※ 공적개요(세부공적을 70자 이내로 간결 · 명료하게 작성)

위와 같이 2019년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9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별첨2> 신청서 - 단체부문

서식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	**단체부문**

접수번호		접수일자	2019년 월 일

포상분야	□기술이전 · 거래 □기술사업화(공공) □기술사업화(민간) □기술나눔 □기술평가 · 금융

소속기관					
	업체(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			홈페이지주소	
	공적기간		년 월 일(총 개월)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목			업 종	
	소재지	본사	(우편번호)		
		공장	(우편번호)		

※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해당분야 업무 시작일로부터 계산

기업(기관)구분	□ 대학 □ 기업(대기업/중견/중소/벤처) □연구소			
구분	매출액	수출액	연구개발비	비고
2018년				
2017년				
2016년				

담당자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소속/직위		팩스	

상기 내용으로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공적조서, 2. 포상동의서, 3. 포상추천서, 4. 공적 증빙자료

2019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서식2

기술사업화 유공자 공적조서

단체부문

업체(기관)명		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설립일	년 월 일	종업원수	명
자산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기업인정현황 (복수 √)	□ 벤처 인증 □ 이노비즈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 □ 기타 ( )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인증번호:)		
연구개발인력	총 명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이하 : 명)		
업종			

경영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당해연도(예상)
	매출액				
	수출액				
	자기자본비율	%	%	%	%
	총자본회전율	%	%	%	%
	영업이익률	%	%	%	%
	매출대비 R&D 투자비율	%	%	%	%

공적 상세기술서(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기업의 경우 규모에 해당사항 ☑표시

※기재한 사항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공적으로 인정됨

서식3	**정부포상 동의서**	단체부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업체(기관)명	
주 소	

위 본인은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원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원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

대표자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원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4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추천서

단체부문

포상분야	□기술이전 · 거래 □기술사업화(공공) □기술사업화(민간) □기술나눔 □기술평가 · 금융

기관	업체(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주생산품목		업 종	

추 천 내 용 ※ 주요 공적내용 요약 작성(70자 이내, 간결 · 명료하게 작성)

위와 같이 2019년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9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붙임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포상 분야		항목(배점)	평가기준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이전·거래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이전·거래 실적 - 기술이전·거래 성사 기술 금액 및 사업화규모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기술이전·거래 신뢰성 기반조성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이전·거래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기술이전·거래 성사 기술관리 및 후속조치 - 기술이전·거래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기술사업화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총 수행한 지원정책(지원업무) 현황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사업화 관련분야별 주요 업무내용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기반조성활동(20)	- 분야별 정책수립·집행 기여도 - 시장활성화 및 기반조성 노력 - 수혜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노력
		파급효과(20)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국가발전, 일자리 창출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
		관련 활동 실적(30)	- 기술개발, 추가 기술개발 등 관련 업무실적 - 상품화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추진 실적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사례 * 추진배경 및 절차, 주요내용, 거래금액, 기술사업화 성공 또는 실패요인

		파급효과(30)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R&BD,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통한 매출 및 일자리 창출 등)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20)	- 기술나눔 관련 업무 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전문성 - 총 수행한 지원정책(지원업무)현황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기술나눔 관련분야별 주요 업무내용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동반성장 활동(20)	- 기술나눔 정책 추진의 기여도 - 기술나눔 활성화 및 기반조성 노력 - 수혜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노력
		파급효과(20)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기술평가·금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 기술평가·금융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전문성 - 기술평가·금융 관련 업무 실적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 기술평가·금융 관련 심사 실적 *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을 고려한 평가 실적 - 기술평가·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금융 사례 * 기술금융 관련 심사 및 투·융자 실적(심사내용 및 결과활용) * 기술금융 지원 실적(지원금액)
		기업육성 주요성과(20)	-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 * 금융지원 기업의 매출증가율, 고용증대율, 제품화 성공 등 *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 컨설팅 등 지원실적 기술 - 기술평가·금융 지원제도 개선 및 개발 - 국내외 투·융자자 유치 및 투·융자 활성화
		파급효과(20)	- 기술 투·융자 활성화를 통한 기반조성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